|  |  |  |
| --- | --- | --- |
| **1.4.4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타지역 가공무역 관리방법**  1999년 9월 22일 세관총서 령 제74호로 반포  2014년 3월 13일 세관총서 령 제218호에 따라 개정  **제1조** 가공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타지역 가공무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를 보강 및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국무원에서 비준한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등 부서의 《가공무역 은행보증금 대장제고를 가일층 완벽히 할 데 대한 의견》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타지역 가공무역”이란 가공무역 경영단위(이하 경영단위라 약칭함)가 수입재료․부품을 다른 세관직속 구역내의 가공생산기업(이하 가공기업이라 약칭함)에 위탁하여 전개하는 가공업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출제품 가공 중 어떤 가공과정을 대외에 발주 가공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대외발주 가공업무 관리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3조** 경영단위와 가공기업이 타지역 가공업무를 전개할 경우 쌍방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규정에 부합되는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경영단위와 가공기업 쌍방은 가공무역 관리와 관련한 국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영단위는 보세수입 재료․부품을 가공기업에 매도하지 못한다.  **제5조** 경영단위가 타지역 가공무역을 전개할 때 그 소재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이 심사발급한 <가공무역업무비준증>과 가공기업 소재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타지역 가공무역 신청표>(양식은 첨부1을 참고, 이하<신청표>)를 기입하고 경영단위 주관세관에서 타지역 가공수속을 진행한다.  **제6조** 경영단위 주관세관이 타지역 가공수속을 처리할 때 타지역 가공무역 업무를 진행했던 경영단위에 대해서는 가공기업 주관세관이 피드백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타지역 가공무역 영수증>(양식은 첨부 2를 참조, 이하 <영수증>)을 사열해야 한다. 사실 확인을 거쳐 계약집행 상황이 정상적인 경우 <신청표>(일식 이연)에 의견을 밝히고 비고난에 서명 날인한 후 <가공무역업무비준증>,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과 같이 밀봉하여 경영단위에 발급하여 가공기업 주관세관에서 수책설립 수속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7조** 가공기업 주관세관은 경영단위가 제공한 <가공무역업무비준증>, 위탁가공계약,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 <신고표> 및 기타 관련서류에 의거하여 수책설립 수속을 처리한다. 가공기업이 해관에서 수책설립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경영단위가 발행한 위탁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 세관이 타지역가공무역을 진행하는 경영단위와 가공기업에 대하여 분류관리를 실시하고 양자의 관리유형이 부동할 경우 그 중 낮은 유형에 따라 감독관리조치를 취한다. 만일 보증금 대장 “실제이월”을 실시할 경우 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등록한 수입재료․부품 세금 등액의 대장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경영단위는 D류 관리를 적용하는 가공기업에 위탁하여 타지역 가공무역 업무를 전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타지역 가공무역 계약 집행 중 밀수, 위법행위가 있거나 또는 정상적인 상계가 안될 경우 가공기업 주관 세관은 대장 보증금을 이월하여 세금과 벌금을 벌충할 책임이 있다. 대장 보증금을 이월하여 세금벌충이 부족할 경우 가공기업 주관세관이 책임지고 경영단위에 세금을 추궁 징수하고 경영단위 주관세관은 이를 협조한다.  **제10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밀수나 규정 위반을 구성할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경영단위와 가공기업은 이 방법과 세관의 각종 규정을 집행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세관이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각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11조** 경영단위와 가공기업이 동일한 세관 직속 구역에 속하지 않으나 동일 법인으로서 타지역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할 경우 상술한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2조** 이 방법은 세관총서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3조** 이 방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  **关于异地加工贸易的管理办法**  1999年9月22日海关总署令第74号发布  根据2014年3月13日海关总署令第218号修改    **第一条** 为了促进加工贸易健康发展，加强和规范海关对异地加工贸易的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以下简称《海关法》）和国务院批准的国家经贸委等部门《关于进一步完善加工贸易银行保证金台帐制度的意见》以及其他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中的“异地加工贸易”是指加工贸易经营单位（以下简称经营单位）将进口料件委托另一直属海关关区内加工生产企业（以下简称加工企业）开展的加工业务。不包括加工出口产品过程中某一加工工序的外发加工业务（外发加工业务管理办法另行制定）。  **第三条** 经营单位与加工企业开展异地加工业务，双方应当签定符合《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规定的“委托加工合同”。  **第四条** 经营单位与加工企业双方应当遵守国家对加工贸易管理的有关规定，经营单位不得将保税进口料件转卖给加工企业。  **第五条** 经营单位开展异地加工贸易，应当凭其所在地外经贸主管部门核发的《加工贸易业务批准证》和加工企业所在地外经贸主管部门出具的《加工贸易加工企业生产能力证明》，填制《中华人民共和国海关异地加工贸易申报表》（格式见附件1，以下简称《申报表》），向经营单位主管海关办理异地加工手续。  **第六条** 经营单位主管海关在办理异地加工手续时，对于办理过异地加工贸易业务的经营单位，应当查阅由加工企业主管海关反馈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异地加工贸易回执》（格式见附件2，以下简称《回执》）。经核实合同执行情况正常的，在《申报表》（一式二联）内批注签章，与《加工贸易业务批准证》、《加工贸易加工企业生产能力证明》一并制作关封，交经营单位凭以向加工企业主管海关办理手册设立手续。  **第七条** 加工企业主管海关凭经营单位提供的《加工贸易业务批准证》、委托加工合同、《加工贸易加工企业生产能力证明》、《申报表》以及其他有关单证办理手册设立手续。由加工企业向海关办理手册设立手续的，应当持有经营单位出具的委托书。  **第八条** 海关对开展异地加工贸易的经营单位和加工企业实行分类管理，如果两者的管理类别不相同，按照其中较低类别采取监管措施。如果需要实行保证金台帐“实转”的，经营单位应当按照规定交付备案进口料件税款等额的台帐保证金。经营单位不得委托按D类管理的加工企业开展异地加工贸易。  **第九条** 异地加工贸易合同执行过程中，如果遇有走私违规行为或者无法正常核销结案的，加工企业主管海关应当负责将台帐保证金转税和罚款。台帐保证金转税数额不足的，由加工企业主管海关负责向经营单位追缴税款，经营单位主管海关应予协助。  **第十条** 对违反本规定，构成走私、违规的，由海关依照《海关法》及《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有关规定处理。经营单位和加工企业在执行本办法和海关各项规定时，负有共同责任。对其违法行为，海关可以根据实际情况分别追究法律责任。  **第十一条** 经营单位与加工企业不在同一直属关区，但是属于同一法人开展异地加工贸易业务的，可以参照上述规定办理。  **第十二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十三条** 本办法自一九九九年十月一日起实施。 |